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- 48호

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11월 11일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(정일윤 의원 대표발의)

1. 제정이유

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임실군 지역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에서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(안 제3조)

다. 안전교육 및 안전 장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 안 제5조)

라. 상해보험 가입 및 협력강화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 안 제7조)

마.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, 준용 등에 관한 규정(안 제8조~ 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4년 11월 16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- 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- 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- 3) 전자우편:charity81@korea.kr

4. 제정안: 붙임

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실군 지역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에서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.
2. “군 장병”이란 「병역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(兵)과 「군인사법」 제2조에 따른 장교(將校), 준사관(準士官), 부사관(副士官)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.
3. “재난복구”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,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.
4. “재난관리물품”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, 재산 및 인력 등 물적·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임실군 지역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안전교육) ①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

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1. 군부대
2. 소방서
3. 통합자원봉사지원단
4. 기타 군수가 인정한 기관

②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5조(안전 장비 등 지원)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난관리물품
2.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
3. 군용 장비의 유류비
4. 식비 등의 일부
5.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

제6조(상해보험 가입) 군수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
2.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

제7조(협력강화) 군수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, 전북특별자치도,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)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①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□ 『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관리자원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(이하 “재난관리”라 한다)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, 재산 및 인력 등 물적·인적 자원을 말한다.

2. “재난관리물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 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.

가.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

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
임실군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